

기안용지

분류기호 문서번호	도 입 442 -	(전화번호 75-6593)	전 결 규정 3 조 / 항 1 제 2 부 시장 전 결 사항
처리기간	1/3	시	장
시행일자		4.2	
보존년한			
보조기관	제2부 시장	전 결	합 번부 담당관 서명
	도시계획국장	도시계획담당관	
	도시계획1과장	지역계획1계장	
기안책임자	김정근	81. 3. (이호영) 조	
경유	각 안 참조		통
수신	고시제		계
참조	신		경
제목	도시계획시설(시장)검정 및 변경 검정		
(제1안) 내부검제			
1. 산업국장, 종로구청장으로부터 서대문구 홍제동 307-3			
입대의 2개소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시장)검정 및 변경 검정 요청이			
있어 내용 검토한바			
2. 홍제동 제1차 무허가시장을 현대화로 정비하고 주구단위법지			
역주만 생계에 편익을 도모하며 주민생활에 필요한 필수품등의 공급을			
원활히 하고저 새로이 시장시설 용지로 결정코저 하며			
3. 종로구 승인동 소재 경동시장은 주변에 신설동 종합시장			
의 개설등으로 시장이용도의 감소로 시장기능이 상실되었고 당해 시설			
은 폐쇄된 상태로 방치되고 있는 실정으로 이를 폐지코저 합니다.			
4. 본건은 당시 제1차 도시계획위원회(81. 2. 27) 및 소위			
위원회(81. 3. 6)에 상정 심의 가결되었기 도시계획법 제12조 규정 및 건			
설부고사 제463호(79. 12. 10)관한 위임사항에 의거 법안과 같이 시행			
하고자 합니다.			

첨부 : 1.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안 및 회의록 각1부.

2. 관계도면 1부. 물.

(제2안) 고 시 안

서울특별시 고시 제 호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제 52 호
담당	담당
인	인

도시계획시설(시장) 검정 및 변경 검정

1.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시장)을 다음과 같이 검정 또는 변경 검정하였거 도시계획법 제12조 규정과 건설부 고시 제463호(79. 12. 10) 관한 위임사항에 의거 이를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1과와 관할구청 도시정비과 및 시민봉사실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압니다.

1981. 3.

서울특별시 장

가. 도시계획시설(시장) 검정 및 변경 검정

구분	시설명	시장명칭	위 치	대지면적	건축계획 (세부시설)
신설	소 배 시 장	홍제시장	서대문구 홍제동	1,216평	지상1층 252.89평
			307-3 입대		지상1층 353.14평
					2층 138.83평
				계	744.86평
변경	폐 지	경동시장	강동구 암사동	503.9평	지하1층 302.1평
			405 입대		지상1층 226.1평
					2층 226.1평
				옥 탑	25.4평
				계	779.7평
변경	폐 지	경동시장	종로구 송인동	537.84평	
			1396, 1397		폐지(구주소: 동대문구 신설동 119-5)

* 별첨 도면표시와 같음 (도면 생략)	
(제3안)	
수신 : 건설부장관	발신 : 서 장
제목 : 동 건	
1. 당시 관내 도시계획시설(시장)에 대하여 별첨 고시문 사본 및 도면과 같이 검정 및 변경 검정하였기 보고합니다.	
첨부 : 고시문 사본 및 도면 1부. 끝.	
(제4안)	
수신 : 수신처참조	발신 : 과 장
제목 : 동 건	
1. 당시 관내 서대문구 홍제동 307-3입대의 2개소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시장) 검정 및 변경 검정되었기 통보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고시문 사본 및 도면 1부. 끝.	
수신처 : 도시계획2과장, 건축지도과장, 구획정리과장	
(제5안)	
수신 : 상정과장	발신 : 과 장
제목 : 동 건	
1. 서대문구 홍제동 307-3 입대의 2개소에 대하여 별첨과 같이 도시계획시설(시장) 검정 및 변경 검정되었기 통보하니 관할구청에서 사업 실시계획 인가후 준공을 득한뒤 개설허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고시문 사본 및 도면 1부. 끝.	
(제6안)	
수신 : 수신처참조	발신 : 서 장
참조 : 도시정비과장	
제목 : 동 건	



